

주요 보도 내용

《조간》

2024. 4. 5.

대 변 인 실

소득 4400만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기재부 '결혼 페널티' 해소 나서
20.7만→25.7만명으로 혜택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248만명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기간

소득이 44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단독가구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이다.

이번 개편안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와 비교해 맞벌이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해 '결혼 페널티'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 인원도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부양가족 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해 지원하고 있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이 지급된다. 현재 맞벌이 가구는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개편안을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올해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예정 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248만명이다.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예정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7월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 기한인 다음 달 10일보다 일주일 빠른 3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